



AX TAX 자료실

연말정산 사전준비 킷 해설서

2026년 귀속

세무·회계 사무소 실무자용 · 법령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함께 쓰는 파일

연말정산_사전준비킷_2026귀속.xlsx

axtax.kr · 개정 반영판 알림 maily.so/lazytax

일반 안내 자료이며 개별 사안은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 1. 이 킷을 만든 이유

연말정산 준비 서식은 이미 많습니다.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주택자금 같은 항목이 한 장에 정리돼 있고, 옆에 O·X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빠르게 쓰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1월 중순쯤 되면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 기준이 어느 조문에서 나왔는지, 작년 기준인지 올해 기준인지, 이 가족은 소득이 조금 넘는데 정말 안 되는지. 서식에 적힌 "총급여 약 몇천만원" 같은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된 경우는 드뭅니다. 체크 칸은 사람이 채우는 것이라 요건을 잘못 이해한 채 O를 적어도 서식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킷은 그 빈칸을 채우려고 만들었습니다. 기존 서식에 없던 것 네 가지를 붙였습니다.

근거. 모든 요건과 율, 한도 옆에 조문 번호와 법제처 원문 링크, 확인한 날짜를 적었습니다. 킷의 수식은 '기준값' 시트 한 곳만 참조합니다. 법이 바뀌면 그 칸만 고치면 됩니다.

검증. 출생연도와 소득을 넣으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됩니다. 판정보다 더 신경 쓴 것은 모순을 잡는 일입니다. 배우자가 없다고 해 놓고 배우자 행을 넣었거나, 부녀자와 한부모를 둘 다 체크했거나, 형제자매를 주거 형편상 별거로 넣었을 때 빨간 글씨로 알려 줍니다.

AI 프롬프트. 고객정보를 빼고도 AI에게 교차검토를 맡길 수 있게 입력 규칙과 프롬프트 다섯 개를 넣었습니다.

실수 사례. 이 해설서의 절반은 자주 틀리는 지점과 가상 사례입니다. 사례의 인물과 숫자는 모두 지어낸 것입니다.

반대로 이 킷이 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결정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 칸은 최저사용금액을 넘었는지, 한도가 얼마인지 같은 문턱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최종 세액은 사무소가 쓰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이나 홈택스에서 확정합니다.

■ 2.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점

2025년 12월 23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 그리고 2026년 4월과 5월의 추가 개정이 이번 연말정산에 들어옵니다. 원문 부칙의 적용 시기까지 확인한 것만 적었습니다.

2-1. 자녀세액공제 나이: 9세 이상, 그런데 2017년생은 빠진다

올해 가장 주의할 변경입니다. 2026년 4월 21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자녀세액공제 본칙 나이가 "8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한 번에 올리지 않고 해마다 한 살씩 올립니다.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입니다(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제2항).

여기에 예외가 하나 붙었습니다. 부칙 제2조 제3항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의 단계 적용을 받지 못하면 본칙 13세 기준이 적용되므로, 2026년에 9세가 되는 2017년생은 올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 귀속 공제 대상은 2016년 이전 출생 자녀입니다.

킷은 세무사 감수를 거쳐 이 원문대로 2017년생을 "제외(2017년생)"로 판정합니다.

하나 더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법제처 '현행법령' 화면이 개정 전 문구(8세 이상)를 보여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준값 시트에 걸어 둔 개정 법률 링크로 부칙까지 확인하세요.

출산·입양 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는 나이 조건과 상관없이 그대로입니다. 2026년에 태어난 아이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출산 공제 대상입니다.

2-2.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에 자녀 가산이 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총급여	자녀등 없음	1명	2명 이상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여기서 '자녀등'은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이 정합니다.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 포함)으로 소득요건을 채우고, 20세 이하이며(장애인은 나이 무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기본공제받는 쪽만 한도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킷의 부양가족 판정표는 이 기준으로 '카드한도 자녀등' 열을 따로 셉니다.

같은 개정으로 카드 공제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2-3. 월세: 따로 사는 배우자도 공제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세대주가 월세 공제를 받았더라도 배우자가 요건을 채우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 조건은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가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것(시행령 제95조 제5항)이고, 부부 월세 합계는 1천만원 한도입니다. 주말부부처럼 근무지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2-4. 교육비: 가족의 소득 제한이 빠지고, 초등 저학년 예체능이 들어왔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 가족 범위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에서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로 바뀌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2026.1.1 이후 지급분부터). 아르바이트 소득이 100만원을 넘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뀐 것은 소득요건 하나입니다. 누구의 교육비인지(공제대상 관계)와 어떤 교육비인지(항목 요건)는 그대로입니다. 가족 교육비는 여전히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한 것만 대상입니다(같은 항 제1호). 부모 같은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이번 개정 뒤에도 공제되지 않고, 예외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같은 항 제3호)뿐입니다. 대학원 교육비(본인 외)와 학자금 대출로 낸 교육비 제외, 비과세 교육비 제외, 1명당 한도(취학 전·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도 그대로입니다.

또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이 다니는 예능학원이나 체육시설 수강료가 새로 교육비에 들어왔습니다(같은 항 제1호 마목,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제10항).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운영하는 과점만 해당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제대로 잡힐지 아직 모르니 영수증을 따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5. 고향사랑기부금 10만~20만원 구간 40%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구간이 나뉘었습니다.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는 40%, 그 위로 2천만원까지는 15%(특별재난지역 3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15만원을 기부했다면 $90,909원 + 20,000원 = 110,909원$ 이 공제됩니다.

2-6.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신설

2026년 5월 1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가 생겼습니다(제91조의28). 2026년 5월 12일 이후 가입해 3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40%, 3천만~~5천만원~~ 20%, ~~5천만~~ 7천만원 10%를 공제하고 최대 1,800만원입니다. 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을 넘을 수 없고,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에도 들어갑니다. 3년 안에 환매하면 환매액의 14%를 추징하므로 직원에게 이 점을 미리 알려 주는 게 좋습니다.

2-7. 그 밖의 변경

- 보육수당 비과세가 "월 20만원 이내"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로 바뀌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뭇, 2026.1.1 이후 지급분). 자녀가 둘인 직원의 총급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 담당과 먼저 맞춰 보세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로 연장됐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 장애인 증명서류는 국세청에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간소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단서, 2026.1.1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입니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해입니다.

2-8.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번 연말정산과 거의 무관하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에는 기본공제 소득요건 300만원 상향, 월세 한도 1,200만원, 대중교통 추가공제 종료, 출산·결혼 세액공제의 재정지원 전환 같은 굵직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안 상세본에 적힌 적용 시기는 대부분 2027년 1월 1일 이후분입니다.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으니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노동조합비 기부금 요건 조정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분부터", "2026년 중 개정 예정"으로 적혀 있어 연내에 시행령이 바뀌면 2026년 납부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개 직전에 다시 확인할 목록은 법령 근거표 G절에 정리했습니다.

■ 3. 자주 틀리는 지점과 실수 사례

아래 사례의 인물과 금액은 모두 가상입니다. 킷의 샘플 시트에 같은 사례를 넣어 두었으니 함께 열어 보면 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례 1. 9세 자녀를 자녀세액공제에 넣었다

직원 A의 자녀는 2017년생입니다. 올해 기준이 9세 이상이라는 말만 듣고 자녀세액공제에 넣었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2017년생은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단계 적용에서 빠지므로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공제는 그대로 받습니다.

판정표에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세액공제 "제외(2017년생)"로 나옵니다. 같은 집의 2019년생 자녀는 "제외(연령)", 2016년생 자녀는 "대상"입니다.

사례 2. 부녀자 요건을 총급여나 근로소득금액으로 봤다

부녀자 공제의 소득 기준은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입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서식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이나 '총급여 약 4,147만원'으로 적힌 경우가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을 때에만 맞는 말입니다.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총급여가 1,500만~4,500만원 구간이면 근로소득공제는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 15%입니다. 근로소득금액 = 0.85 × 총급여 - 525만원이 되고, 이 값이 3천만원이 되는 총급여는 3,525만원 ÷ 0.85 = 4,147,058.82원입니다. 4,147,058.82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이 29,999,999.99원대라 요건을 채우고, 1원만 많아도 3천만원을 넘습니다.

그러니 직원 B가 총급여 4천만원에 임대소득금액 300만원이 있다면, 총급여만 보면 기준 안쪽이지만 종합소득금액은 2,875만원 + 300만원 = 3,175만원이라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판정표는 본인 총급여와 '근로 외 종합소득금액'을 따로 받아 합산한 뒤 판단합니다.

사례 3. 부모님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서 공제했다

직원 C의 할머니는 올해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300만원을 받았고 연금소득금액이 50만원 있습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니 괜찮다고 보고 기본공제를 넣었습니다.

총급여 500만원 특례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 쓰는 규정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괄호). 다른 소득이 섞이면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해 더해야 합니다. 총급여 3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는 70%인 210만원, 근로소득금액은 90만원입니다. 여기에 연금소득금액 50만원을 더하면 140만원으로 100만원을 넘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산하면, 다른 소득이 한 톨도 없어도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가족은 총급여 3,333,333원까지만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안에 들어갑니다. 판정표는 근로와 다른 소득이 함께 들어오면 "근로+다른 소득: 총급여 500만원 특례를 쓸 수 없어 소득금액 합계로 판정" 경고를 띄웁니다.

사례 4. 소득이 넘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빼 버렸다

직원 D의 아버지는 총급여 600만원이라 기본공제에서 빠졌습니다(근로소득금액 210만원). 그런데 아버지 수술비까지 같이 빠졌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나머지 관계 요건을 채우면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 지급분부터는 교육비도 같은 구조가 됐습니다(2-4 참조).

다만 누가 공제하는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과, 형제자매 사이에서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 중복으로 청구되지 않는지를 확인한 뒤 안내를 확정합니다. 킷은 이 지점을 "감수 필요(보류)"로 표시합니다. 교육비는 2026년 지급분부터 소득요건이 없어졌지만 부모 같은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원래부터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5. 부녀자와 한부모를 둘 다 넣었다

직원 E는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세대주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705만원입니다. 부녀자 요건(배우자 없는 여성,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도 채우고 한부모 요건(배우자 없음,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있음)도 채웁니다. 둘 다 넣으면 150만원이 되지만,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단서는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판정표 본인 칸에서는 두 요건이 모두 "충족"으로 나오고, 적용 칸에는 "한부모 적용", 확인할 점에는 "부녀자·한부모 동시 충족: 한부모만 적용"이 뜹니다.

사례 6. 22세 장애인 자녀를 기본공제에서 뺐다

자녀가 20세를 넘으면 기본공제에서 빠진다고 기억하기 쉽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괄호). 소득요건만 채우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이 붙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직원이라면 한부모 공제(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도 가능합니다. 이 자녀는 카드 한도 계산의 '자녀등'에도 들어갑니다.

판정표에서 장애인 칸을 "예"로 바꾸면 나이요건이 "충족(장애인)"으로 바뀌고, 20세 초과 자녀 경고가 사라지는 대신 장애인증명서 확인 문구가 뜹니다.

사례 7. 따로 사는 형에게도 '주거 형편상 별거'를 적용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은 직계존속, 즉 부모와 조부모에게만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60세가 넘는 형이 다른 집에 살고 있다면 취학이나 요양 같은 일시퇴거 사유가 아닌 한 생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판정표에서 형제자매 행의 생계를 "주거형편상 별거"로 넣으면 생계요건 "미충족", 기본공제 "제외"로 나오고 "주거형편상 별거 인정은 직계존속만" 경고가 붙습니다.

사정이 애매하면 생계 칸에서 "기타/확인필요"를 고르세요. 이때 기본공제는 "판정 보류(확인 필요)"로 멈추고, 친족관계별 법정 요건을 다시 보라는 안내가 뜹니다. 주민등록 동거와 현실적 생계가 원칙(제53조 제1항), 취학·질병·요양·근무·사업상 일시퇴거는 인정(같은 조 제2항), 주거 형편상 별거는 직계존속만 인정(같은 조 제3항)입니다. 별거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선택지로 바꾸면 판정이 이어집니다. 다만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에서 이미 걸린 가족은 생계와 상관없이 "제외"로 나옵니다.

사례 8.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자 공제했다

맞벌이 직원 F와 배우자가 서로 다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둘 다 자녀를 기본공제에 넣었습니다. 한 사람을 두 거주자가 공제할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시행령 제106조) 나중에 한쪽이 수정해야 합니다. 더 흔한 실수는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세액공제는 아내가 받는 식으로 쪼개는 것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받는 사람만 받습니다.

맞벌이메모 시트의 중복 점검 표에 가족별로 누가 기본공제를 받는지 적으면, 둘 다 "예"일 때 "중복", 자녀세액공제를 다른 쪽에 적으면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받는 쪽만"이 뜹니다.

사례 9. 형제자매 카드와 소득 있는 배우자 카드를 합쳤다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대상은 소득요건을 채운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형제자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벌이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도 배우자 본인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합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놓이기 쉬운 쪽도 있습니다. 60세가 안 돼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라도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하면 카드 사용액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합산은 나이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례 10. 연말에 집을 팔았으니 청약저축 공제가 된다고 봤다

직원 G는 올해 6월에 집을 팔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입니다. 월세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을 보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연중에 한 번이라도 주택이 있었다면 청약저축 공제는 안 됩니다.

공제점검 시트는 '12월 31일 현재 주택 수'와 '2026년 중 주택을 가진 적'을 따로 묻습니다. 뒤쪽이 "예"면 청약저축 판정이 "과세기간 중 주택 보유: 대상 아님"으로 바뀝니다.

■ 4. 시트 사용법

파일은 아홉 개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열면 '샘플-가족'과 '샘플-공제'부터 보세요. 앞 사례들이 들어 있습니다.

① **자료요청.** 거래처 직원에게 보낼 준비물 목록입니다. 간소화 자료로 잡히지 않거나 자주 빠지는 25개 항목을 가족, 주거, 의료, 교육, 기부, 기타로 나눴습니다. 해당 없는 줄은 지우고 맨 위 안내문의 제출 방법과 기한 칸을 채워 보내면 됩니다. '해당'과 '받음' 칸에 "예"를 넣으면 맨 아래에 "받을 것 몇 건 중 몇 건 받음"이 계산됩니다. 근거·원문·확인일 열은 사무소 확인용이라 발송본에서는 숨겨도 됩니다.

② **부양가족판정.** 본인 정보(성별, 배우자 여부, 세대주, 총급여, 근로 외 종합소득금액, 출생연도, 장애인, 혼인신고)를 넣고 아래 표에 가족을 최대 12명까지 넣습니다. 가족마다 관계, 출생연도, 총급여, 근로 외 소득금액, 장애인, 생계, 다른 사람이 공제받는지, 2026년 출생·입양 순위를 넣으면 흰 칸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칸은 일부러 만들지 않았습니다. 호칭과 출생연도면 판정에 충분합니다.

판정은 '대상', '제외', '다른 사람 공제', '입력 확인', '판정 보류(확인 필요)' 다섯 가지로 나옵니다. '입력 확인'은 생계 칸을 비웠거나 출생연도가 없다는 뜻이고, '판정 보류(확인 필요)'는 생계를 '기타/확인필요'로 골랐다는 뜻입니다. 오른쪽 '확인할 점'에는 왜 그렇게 나왔는지, 무엇을 더 봐야 하는지가 적힙니다.

③ **공제점검.** 신용카드, 주택청약,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국민성장저축, 종합한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차례로 점검합니다. 항목마다 혼한 누락과 혼한 과다공제를 옆에 적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과 항목별 순서(일반 → 본인 등 → 미숙아 → 난임)를 반영해 공제 대상액까지 계산합니다. 3% 문턱을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채우고 모자란 부분을 다음 항목에서 빼는 순서를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㉔ **맞벌이메모.** 부부 각자의 총급여를 넣으면 카드 최저사용금액, 의료비 문턱, 월세·연금계좌 공제율 구간이 참고용으로 나옵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항목별로 법이 정한 범위를 적어 두었고, 누가 공제받을지와 판단 근거, 확인자를 사람이 적습니다. 시트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유불리는 부부 각자의 세율 구간, 공제가 산출세액을 넘어 버려지는 부분, 문턱 통과 여부가 함께 걸려 있어서 숫자 몇 개로 단정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㉕ **AI프롬프트.** 6장에서 설명합니다.

㉖ **기준값.** 킷이 쓰는 요건·율·한도 100개와 근거 조문, 원문 링크, 적용기한이 있습니다. 여기 B열만 고치면 모든 시트가 따라 바뀝니다. 내년에 쓰려면 이 시트부터 새 법령과 대조하면 됩니다.

색 규칙은 세 가지입니다. 회색 칸은 입력, 흰 칸은 수식, 빨간 글씨는 확인이 필요한 곳입니다. 시트 보호는 걸지 않았습니다. 사무소 사정에 맞게 고쳐 쓰라는 뜻이지만, 흰 칸을 덮어쓰면 판정이 멈추니 주의하세요.

■ 5. 판정 기준 몇 가지

나이는 '2026 - 출생연도'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5항은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국세청도 매년 '20세 이하의 몇 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같은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킷은 생년월일을 받지 않으려고 출생연도만 쓰고, 이 방식에 맞춰 판정합니다. 생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계 사례가 있다면 담당 세무사가 원문으로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의료비의 6세·65세 기준은 기본공제와 기준일이 다릅니다. 6세 이하의 과세기간 개시일(2026년 1월 1일), 65세 이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2019년생 대부분은 2026년 1월 1일에 6세 이하지만 1월 1일생은 아닙니다. 경계에 있으면 생일을 확인하세요.

생계 판정은 입력값을 믿습니다. 킷은 '동거', '주거형편상 별거', '일시퇴거', '따로 삶', '기타/확인필요' 중 사람이 고른 값으로 판정합니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주민등록, 부양 사실, 별거 사유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 수식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기타/확인필요'를 골라 판정을 멈추고 사례 7의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 6. AI를 쓸 때의 선

AI는 이 일에서 두 가지를 잘합니다. 판정 결과를 다른 눈으로 다시 보는 것, 그리고 직원에게 보낼 질문이나 안내문을 다듬는 것입니다. 반대로 맡기면 안 되는 일도 분명합니다.

첫째, 고객정보를 넣지 않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회사명, 계좌·카드번호, 병원과 학교 이름은 지웁니다. 사람은 '직원A', '모', '자녀1'로, 날짜는 출생연도로 바꿉니다. 판정표를 그렇게 설계해 두었기 때문에 표를 그대로 복사해도 식별정보가 떨어져 가지 않습니다.

둘째, 기준을 먼저 줍니다. AI는 세율과 한도를 그럴듯하게 기억해서 말합니다. 작년 숫자나 개정 전 숫자일 때가 많습니다. 기준값 시트의 해당 행을 함께 붙여 넣고 "이 기준만 써라, 모르면 원문 확인 필요라고 써라"고 요구합니다. 올해 자녀세액공제처럼 개정 직후인 항목은 부칙 원문까지 붙여 넣어야 합니다.

셋째, 결론은 사람이 냅니다. AI의 답은 초안입니다. AI가 인용한 조문은 원문 링크로 직접 대조하고, AI 답을 고객에게 그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AI프롬프트 시트에는 다섯 개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판정 교차검토, 누락 공제를 찾는 인터뷰 질문 만들기, 준비물 안내문 다듬기, 조문 대조, 맞벌이 배분 쟁점 정리입니다. 다섯 개 모두 추정하지 말라는 문장과 결론을 쓰지 말라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빼지 마세요.

■ 7. 이 킷의 한계와 감수 표시

2026년 9월 26일 세무사 감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원문대로 유지: 2017년생 자녀의 2026년 자녀세액공제 제외, 나이를 '2026 - 출생연도'로 판정하는 방식, 맞벌이 배분은 결론 없이 기록과 중복 경고만 제공
- 반영해 고침: 생계 선택지에 '기타/확인필요'를 두고 판정을 보류하게 함, 교육비는 소득요건 폐지와 공제대상 관계·항목 요건을 나눠 안내
- 아직 보류('감수 필요(보류)' 표시 유지): 소득요건을 넘는 가족의 의료비를 누가 공제하는지(기본공제대상자 요건과 형제자매 간 실제 부담·중복 청구 관계 확인 후 확정), 월세 주택 요건 중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분(자녀 3명 이상 100m²)의 적용 시기(시행령 부칙에 적용례가 없어 2026년 1~2월 지급 월세 처리 확인 필요)

그리고 공개 전에 다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결과, 노동조합비 기부금 요건 시행령 개정 여부, 국세청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책자입니다. 기준값 시트와 법령 근거표의 확인일(2026-09-26) 이후 바뀐 게 없는지 확인한 뒤 배포합니다.

법령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확인일 2026-09-26 · 만든 곳: AX TAX

■ 부록. 01-법령근거표

킷과 해설서의 수치·기한은 아래 조문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해 정했습니다. 확인일은 모두 2026년 9월 26일입니다. 조문 링크는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약칭: 「소」 소득세법, 「소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 조세특례제한법, 「조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A. 인적공제

항목	내용	근거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	「소」 §50①
소득요건(배우자·부양가족)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소」 §50②·3
직계존속 나이	60세 이상	「소」 §50③가
직계비속·입양자 나이	20세 이하	「소」 §50③나
형제자매 나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소」 §50③다
장애인 나이 예외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소」 §50③ 괄호
수급자·위탁아동	기초생활 수급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소」 §50③라·마, 「소령」 §106㉔㉕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주민등록 동거 + 현실적 생계. 직계비속·입양자는 예외, 직계존속 주거형편 별거 인정, 일시퇴거 인정	「소」 §53①㉔㉕
판정 시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망·치유는 전날	「소」 §53④
나이 판정 특례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인정	「소」 §53⑤
중복 공제 조정	한 사람만 공제. 배우자 우선, 직전 연도 공제자, 소득 많은 사람 순	「소」 §50③, 「소령」 §106①㉔
경로우대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소」 §51①1
장애인	1명당 200만원	「소」 §51②2
장애인 범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장애아동, 상이자 등 근로능력 없는 사람, 희귀성난치질환 등으로 주기적 치료 필요해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사람	「소령」 §107①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 배우자 있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연 50만원	「소」 §51③3
한부모	배우자 없고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 있음. 연 100만원	「소」 §51⑥6
부녀자·한부모 중복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만	「소」 §51⑩ 단서
인적공제 한도	종합소득금액 초과분은 없는 것	「소」 §51④

B. 근로소득공제와 총급여 환산

항목	내용	근거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70% / ~1,500만원 350만+초과분 40% / ~4,500만원 750만+15% / ~1억원 1,200만+5% / 1억원 초과 1,475만+2%, 한도 2천만원	「소」 §47①㉔

C. 자녀·출산·결혼

항목	내용	근거
자녀세액공제 대상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손자녀. 본칙 13세 이상	「소」 §59의2㉔ (2026.4.21 개정)
2026년 귀속 연령	9세 이상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법률 제21548호 부칙 §2㉔1
2017년생	단계 특례(부칙 §2㉔) 적용 제외 → 본칙 13세 기준 → 2026년 공제 제외	법률 제21548호 부칙 §2㉔
자녀세액공제 금액	1명 25만, 2명 55만, 3명 이상 55만 + 2명 초과 1명당 40만	「소」 §59의2㉔1~3
출산·입양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소」 §59의2㉔
결혼세액공제	2026.12.31 이전 혼인신고, 생애 1회, 50만원	「조」 §92㉔

D. 소득공제

항목	내용	근거
신용카드 등 최저사용금액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조」 §126의2㉔
신용카드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현금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체육시설 등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	「조」 §126의2㉔1~5
신용카드 기본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자녀등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 초과 250만(275만, 300만)	「조」 §126의2㉔
신용카드 추가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분, 7천만원 이하 300만원·초과 200만원 한도	「조」 §126의2㉔1
한도용 '자녀등'	직계비속(입양·위탁 포함), 소득요건 충족, 20세 이하(장애인 무관), 다른 거주자 기본공제 미적용	「조령」 §121의2㉔
가족 카드 합산	소득요건 충족 배우자, 생계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나이 무관, 형제자매 제외, 다른 거주자 기본공제자 제외)	「조」 §126의2㉔, 「조령」 §121의2㉔
카드 공제 제외	보험료, 학교 수업료, 공과금·관리비·통신료, 상품권, 리스료,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 재산, 국외 사용분 등	「조」 §126의2㉔④, 「조령」 §121의2㉔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연 30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조」 §87㉔
주택임차차입금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미공제 시 세대원), 원리금 40%, 청약공제와 합쳐 400만원	「소」 §52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한도 800만 (15년↑)·2,000만·1,800만·600만	「소」 §52㉔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3천만원 이하 40%, 3천만~5천만원 1,200만+20%, 5천만~7천만원 1,600만+10%, 7천만원 초과 1,800만원. 종합소득금액 한도	「조」 §91의28㉔
소득공제 종합한도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제외)·청약·카드·국민성장저축 등 합계 2,500만원	「조」 §132의2㉔
연금보험료	공적연금 기여금 전액	「소」 §51의3㉔

E. 세액공제

항목	내용	근거
보장성보험료	12%(장애인전용 15%), 종류별 100만원	「소」 §59의4㉔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무관)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일반 700만원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 등 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 30%	「소」 §59의4㉔
의료비 범위	안경 1명당 50만원, 산후조리원 출산 1회 200만원, 실손보험금 제외, 미용·성형·건강증진 의약품 제외	「소령」 §118의5㉔②
교육비: 소득요건 폐지	2026.1.1 이후 지급분부터 대상 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소」 §59의4㉔ 본문
교육비: 공제대상 관계(유지)	가족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만. 직계존속 교육비는 제외(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이라 직계존속도 가능)	「소」 §59의4㉔1·3
교육비: 항목 요건·제외(유지)	대학원 교육비(본인 외)와 학자금 대출로 지급한 교육비 제외, 비과세 교육비 제외, 한도 취학전·초중고 300만원·대학생 900만원, 본인·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소」 §59의4㉔ 단서·1 단서
교육비 신설 항목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교생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 주 1회 이상)	「소」 §59의4㉔1마, 「소령」 §118의6㉔~㉔
교육비 범위	교복 1명당 50만원(중·고), 현장체험학습 30만원, 직계존속 교육비 제외(장애인 특수교육비 예외)	「소」 §59의4㉔1·3, 「소령」 §118의6㉔
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 30%. 일반기부금 한도 소득금액 30%(종교단체 기부 있으면 10% + min(20%, 종교 외))	「소」 §59의4㉔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 100/110, 10만~20만원 40%, 20만~2천만원 15% (특별재난지역 30%)	「조」 §58㉔
월세	무주택 세대주(미공제 시 세대원),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 연 1천만원 한도	「조」 §95의2㉔
월세 배우자 추가공제	세대주가 공제받은 경우 배우자도 요건 충족 시 추가. 부부 합산 1천만원. 시·군·구가 달라야 함	「조」 §95의2㉔, 「조령」 §95㉔
월세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자녀 3명 이상은 100m ² 이하 또는 4억원 이하), 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	「조령」 §95㉔
연금계좌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소」 §59의3㉔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특별세액·월세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연 13만원	「소」 §59의4㉔1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70%(청년 90%),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신청 필요	「조」 §30㉔㉔

F. 비과세 (총급여 산정에 영향)

항목	내용	근거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소」 §12제3호머목2)
출산지원금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분 전액	「소」 §12제3호머목1)